

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 사전통지(의견제출 통지)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1. 6. 1.

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



1.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
2. 근 거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제29조제1항제6호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연 번	성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		송달불능 사유	주소
				예정된 처분 제목	처분 사유	처분 내용		
1	이○진	86.7.1.	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(의견제출 통지)	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 종료	2회에 걸친 방문상담일자 ·의무부과 재지정 안내서 통지에도 방문 불이행	○ 수급자격 인정철회 및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○ 종료일로부터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	폐문부재	서울시 서초구 사임당로 (이하 생략)

4. 공고기간: 2021.6.1. ~ 2021.6.15.(15일간)

5. 기타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초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고경주(Tel. 02-580-4945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